##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12

발의연월일: 2023. 2. 3.

발 의 자:김영배·송갑석·한병도

홍익표 · 김윤덕 · 김종민

유정주 · 송기헌 · 고민정

신영대 • 이장섭 • 장철민

김철민 • 윤호중 • 설 훈

조오섭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등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 준비서면 부본, 판결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이로 인해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 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법 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 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5항·제8항, 제20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10조제2항 후단, 제255조제1항 후단 및 제273조 후단 신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있다.
-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8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판결한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 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의 주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적을 수 있다.

- 1.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
- 2. 원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 외의 주소등으로써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판결서의 원고 주소로 동의를 얻은 장소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
- ⑥ 법관이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따라 원고의 주소는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 ⑦ 제5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⑧ 제6항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원고의 주소를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송달장소로 본다. 이 경우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84조에 따른 송달 영수인으로 본다.

제2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수 있다.

제25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

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27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5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
서의 교부청구) ① ~ ④ (생	서의 교부청구)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
	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
	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
	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u>있다.</u>
<u>⑤</u> · <u>⑥</u> (생 략)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u>정한다.</u>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u><신</u>설>

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판결한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 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의 주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적을 수 있다. 1.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

- 2. 원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 소 외의 주소등으로써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터 판결서의 원고 주소로 동의를 얻은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
- ⑥ 법관이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따라 원고의 주소는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 ⑦ 제5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생략)

②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후단 신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 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제6항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원고의 주소를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송달장소로 본다. 이 경우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84조에 따른 송달 영수인으로 본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현행 과 같음)

(<u>2</u>) -----

-.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신 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원 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

\_\_\_\_\_

-----. <u>이 경우 법원</u> 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② (생략)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 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우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관 하여는 제25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